

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

5-1-16

규정번호 5-1-16
제정일자 2010.3.1
최근개정 2026.9.21
개정차수 14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수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의 강의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,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평가시기) 강의평가는 매 학기마다 실시한다.

- ① 실시 시기는 매 학기 종료 2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(항신설 2020.10.26.)
- ② 필요 시 중간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 실시시기와 시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항신설 2020.10.26.)

제 3 조 (평가방법) ① 강의평가는 교무처 학사지원팀 주관으로 실시하며 학생에 의한 설문을 통하여 실시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- ②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는 평가 장소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 4 조 (평가대상)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한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강의평가 설문과 강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, 팀티칭교과목, 개인레슨형태의 교과목은 평가에서 제외된다.

제5조(평가점수 산정) 강의평가 설문결과는 제4조(평가대상)에 따른 교과목으로 산정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평가응답은 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.(개정 2025.1.23., 2026.9.21.)

1. 취업, 실습 등으로 강의평가 참여자 수가 수강인원의 2/3에 미달한 교과목(신설 2026.9.21.)
2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(신설 2026.9.21.)
3. 총 수업시간 수의 1/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의 당해 교과목(신설 2026.9.21.)

제 6 조 (평가내용) 강의평가 내용은 수업목표, 수업내용, 수업방법, 수업효과, 수업만족도 등의 수업관련 설문과 수업참여 학습자의 자유기술 의견을 포함한다.(개정 2018.03.06.)

제 7 조 (배점기준) 각 설문 항목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하며,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설문내용을 평가한다.

평가항목	매우 그렇다	그렇다	보통이다	그렇지않다	매우 그렇지 않다
배 점	5점	4점	3점	2점	1점

제 8 조 (평가결과의 활용) ① 담당교수는 강의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.

-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에 “교육업적영역”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활용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16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

- ③ 강의평가 결과는 별표1의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.(개정 2017.10.25.)
- ④ “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” 제13조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 동일 직급 내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하여서는 ‘교원인사위원회’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승진을 유보할 수 있다.
- ⑤ 교무처에서는 강의평가 결과 자율기술 의견에 “성희롱”, “성추행”, “성폭력” 등이 포함된 경우 상담센터와 협의하여 별도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항추가 2018.03.06.)(개정 2018.12.10.)

제 9 조 (평가결과의 공개) 강의평가 결과는 담당교수 개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무처장은 교원인사 및 교육과정 편성·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관련 학과 및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할 수 있다.(개정 2016.12.28., 2018.03.06.,2024.7.24)

제 10 조 (강의 우수교수의 선정 및 포상)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전임교원과 강사 중 매학기 강의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10.29., 2019.07.30.,2024.7.24)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16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9조, 제10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,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)

부 칙[별표개정]

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되,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5조제1호·제2호·제3호, [별표1]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16 강의평가운영에관한규정

<별표 1> 강의평가 결과 활용기준(제8조 제3항 평가결과의 활용 관련사항)(개정 2017.10.25., 2026.9.21.)

구분	평가 점수	1회	2회[4학기 중]	3회[6학기 중]
전임교원 (강의전임/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)	70점 미만	교수연수(10시간 이상) 책임시수(기본책임 시수만) 강의	교수연수(20시간 이상) 책임시수(기본책임 시수만) 강의	해당교과목 강의배제
비전임교원 (겸임/초빙/객원/ 특임교원 포함)		경고	해당교과목 강의배제	-
강사		경고	해당교과목 강의배제	-

※ 단, 1년(2개 학기) 이내에 교수연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교과목 강의배제